

서울특별시의회
제331회 정례회

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제 안 설 명



2025. 6.

서울특별시의회
김기덕 의원 (더불어민주당, 마포4)

□ 존경하는 장태용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안녕하십니까?

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기덕 의원입니다.

□ 본 의원이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하여

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살펴보면,

최근 증가하는 주취자 신고가 계속되는 상황에서

정신응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,

올해 4월, 서울시 동부병원에서 ‘보호조치 통합 지원센터’를

개소하면서 주취자 보호 지원을 위한

노력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.

□ 이에 주취자 보호에 대한 인권 존중 및

인권 침해 발생 방지를 위한 기본원칙을 신설해,

보호 지원을 위한 규정을 강조하고,

주취자 보호설치 및 운영에 있어,,

가족, 친척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할 수 있는

근거 조항을 마련하여, 주취자 보호 지원 및 인권 존중에 대한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- 이에 안 제2조의2의 경우,
주취자 보호에 대한 기본원칙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5조의 경우,
주취자 보호 설치 및 운영에 있어
가족 및 친지 등 연고자에게
통지 및 인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
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
-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으로
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